

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업체 특별조사 결과 대체로 법규준수

협회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연구·개발, 전시 등의 목적으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등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이하 면제확인)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인		처리기관 KPODA
* 신청서작성		
1 어려 두 양식을 다룬하여 작성		점수
면제확인신청서 및 유통공정서 작성방법 예시보기		점수
면제확인신청서		서류 검토
면제확인신청서		제출·구조·검사 확인
면제확인신청서		점수
면제확인신청서		면제서 발급(필증 교부)
2 필요한 추가 서류를 첨부함		
제품설명서(기술문서나 설명지트-도면, 제품이미지, 소책 부본)		제품·구조·검사 확인
선풋서류(Police, Packinglist, Bill)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신사)		
기타(해당조문별 연락대상에 해당될 증명하는 추가 법무서류보기)		
3 신청서류으로 점수		
한국제품안전협회 FAX: 02-890-6999		

▲ 면제확인절차

년도	2008	2009	2010	2011년 8월까지
건수	2,066	2,395	3,132	2,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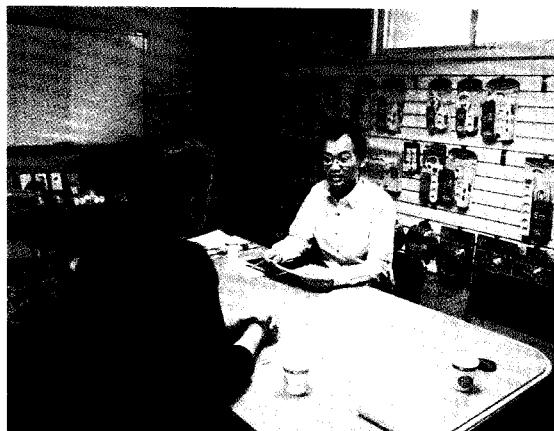
▲ 연도별 면제확인 건수

하지만 면제확인을 받아 수입된 제품(직류전원장치, 어댑터, 전기충전기, 휴대전화충전기 등)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불법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11년도 1월에서 8월까지 면제확인을 받은 247개업체(2402건) 중 다양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품목 및 고가제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제확인을 받을 당시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여행용어댑터에 대해 면제확인을 받은 W社였다. 해당업체는 유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조사원이 방문하였을 당시 여행용어댑터를 출고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조사원은 해당 업체의 대표자를 만나 허가된 면제 확인 제품이외의 불법제품을 유통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와 사업장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품라벨에 잘못된 점을 발견한 조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업체 대표자는 이를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면제확인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니 만큼 기업들은 이를 불법제품 유통에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협회는 이러한 불법제품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반업체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기관에 조치의뢰 할 것이다.”며, 조사원은 해당업체의 대표에게 앞으로도 면제확인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협회에서는 향후 면제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 품목에 대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업체들은 면제확인제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